2020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

Ⅰ 미생물 검사 계획

1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계획

❑ 목 적

○ 도축장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 방지·감소를 통한 식육의 안전성 확보

❑ 세부 계획

○ **검사대상**: 도축되는 소, 돼지, 양(염소 포함), 닭 및 오리의 식육

○ **검사항목**: 일반세균 수 및 대장균(*Escherichia coli* Biotype Ⅰ) 수

○ **검사기관**: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

○ **시료채취**: 기관별 관내 도축장에서 월 4회 이상, 매회 축종별로 각 3건 이상의 시료 채취

○ **검사방법**: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

○ **판정기준**:「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」 제11조

○ **검사건수**: 97,796건

품목	소	돼지	양(염소)	닭	오리	합계
건수	32,754	37,290	4,360	19,400	3,992	**97,796**

❑ 검사결과 조치사항

○「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」제12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당 작업장 지도 및 기준초과 도축장을 검역본부에 보고 등

2 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계획

❑ 목 적

○ 식용란 미생물의 오염 방지·감소를 통한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

❑ 세부 계획

○ **검사대상**: 국내 생산되는 식용란

○ **검사항목**: 이물, 변질, 부패, *Salmonella Enteritidis, Salmonella Typhimurium, Salmonella Thompson*

○ **검사기관**: 시·도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

○ **시료채취**: 가금류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채취

* 시료채취의 공정성과 정확성 등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농장에서 직접 채취수

○ **검사방법**: 관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20개 시료를 무작위 선정하여 전란을 혼합한 다음 검사를 실시

* 검사법: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중 살모넬라 검사법에 의함

○ **판정기준**: 식용란 중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(허용기준)

○ **검사건수**: 4,039농가 8,078건

❑ 검사결과 조치사항

○「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당농장 지도 등

Ⅱ 잔류물질 검사 세부 계획

1 식육 잔류물질 검사 계획

❑ 목 적

○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 실시를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

❑ 세부 계획

○ **검사대상**: 소·돼지·닭·오리·양(염소 포함) 및 말의 식육

○ **검사기관**: 시・도 축산물 시험・검사기관

○ **검사물량**: 66,415(마리/건)

소	돼지	닭	오리	양	말	계
18,945	37,162	6,236	1,112	2,410	550	66,415

○ **검사항목**: 총 177종

-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되, 위해도와 물질별 분석법 확립 여부에 따라 검사대상물질로 선정

○ **시료 채취방법**

- 「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」 별표 1.에 따른 시료채취요령 준수
- 기타 시료채취에 관한 세부 방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"식품의 기준 및 규격"에 따라 실시

○ **검사방법**

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식육의 효율적인 잔류검사를 위하여 「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」 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

○ **검사결과 판정**

-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부 판정

○ **검사결과 조치**

- 잔류위반 농가 지정, 규제검사,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등

2 잔류물질 검사 계획(식용란)

❑ 목 적

○ **식용란**의 **잔류물질검사**의 **효율적인 실시**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

❑ 세부 계획

○ **검사대상**: 국내 생산되는 식용란

○ **검사기관**: 시・도 축산물 시험・검사기관

○ **검사물량**: 5,690(건)

○ **검사항목**: 80종

-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되, 위해도와 물질별 분석법 확립 여부에 따라 검사대상물질로 선정

○ **시료채취 방법**

- 「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에 따른 시료 채취 요령 준수
- 기타 시료채취에 관한 세부 방법은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"식품의 기준 및 규격"에 따라 실시
- 채취장소: 산란계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채취

○ **검사방법**

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라 실시원칙
- 식용란의 효율적인 잔류검사를 위하여「축수산물 유해물질 시험법 편람」 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

○ **검사결과 판정**

-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"잔류허용기준"에 따름

○ **검사결과 조치**

- 잔류위반 농가 지정, 규제검사,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등